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115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의결주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등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 자치법규 중 각종 나이 표시 및 기타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행정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 (안 제1조 ~ 제10조)

나. 인용 법조문 조항번호 등을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사항에 맞게 정비 (안 제11조 ~ 제18조)

####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민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3. 7. 13. ~ 8. 2. (제출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만75세”를 “75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3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13세 이상 만 18세”를 “13세 이상 18세”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9세 이상 만24세”를 “9세 이상 24세”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바목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만13세 ~ 만18세 ”를 “13세 ~ 18세”로 하고,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만 18세 이하”를 “18세 이하”로, “만 18세를”을 “18세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만8세”를 “8세”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14조”를 “「도로법」 제14조”로, “제17조2”를 “제18조”로 한다.  
제7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로 한다.

제11조 중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효행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u>만 100세</u>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8조(효행 지원 등) ① ----- ----- ----- -- <u>100세</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u>만65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p> <p>2. · 3.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u>65세</u> ----- -----.</p> <p>2. · 3. (현행과 같음)</p>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u>만60세</u>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60세</u>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p> <p>1. 노인 중 <u>만75세</u> 이상의 사람</p> <p>2.·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① ----- ----- ----- ----- ----- -----.</p> <p>1. ----- <u>75세</u> -----</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의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u>만13세</u> 미만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p> <p>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는 <u>만13세 이상 만18세</u>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 <u>13세</u> ----- ----- ----- ----- ----- -----.</p> <p>2. ----- -- <u>13세 이상 18세</u> ----- ----- ----- ----- ----- -----.</p> <p>3.·4. (현행과 같음)</p>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9세 이상 만24세</u>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9세 이상 24세</u> ----- -----.</p> <p>2. (현행과 같음)</p>

6.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p> <p>가. ~ 마. (생략)</p> <p>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u>만 18세</u>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p> <p>사. ~ 파. (생략)</p> <p>3.·4.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 <u>18세</u> ----- ----- -----</p> <p>사. ~ 파.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현 행

### [별표 2]

####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영리성공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필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 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스포츠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강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성인	1개입당 2,500 - 4,500		
망월나눔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강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성인	1개입당 2,500 - 4,5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 개인사용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10,000 - 18,000	*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 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3,000 - 6,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10,000 - 18,000		*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 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때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권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 개 정 안

### [별표 2]

####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영리성공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필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 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스포츠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강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성인	1개입당 2,500 - 4,500		
망월나눔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강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성인	1개입당 2,500 - 4,5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 개인사용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10,000 - 18,000	*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 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3,000 - 6,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10,000 - 18,000		* 망월나눔목 테니스장, 망월유 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때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권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u>만 18세 이하</u>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u>만 18세를 초과</u>하더라도 가능)</p> <p>8. (생략)</p>	<p>제3조(지원 대상) ----- ----- -----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18세 이하</u>----- ----- -- <u>18세를</u> ----- ----</p> <p>8. (현행과 같음)</p>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1조(가사서비스의 지원대상) 제10조에 따라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p> <p>1. <u>만8세</u> 이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을 것</p> <p>2. 3. (생략)</p>	<p>제11조(가사서비스의 지원대상) - ----- ----- ----- ----- --.</p> <p>1. <u>8세</u> ----- -----</p> <p>2. 3. (현행과 같음)</p>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u>만 65세</u>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65세</u> ----- ----- ----- ----- -----</p>
<p>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u>만 65세</u>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지원대상) ① ----- ----- ----- ----- ----- <u>65세</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p> <p>① 삭제</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만 65세</u>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p> <p>8.·9. (생략)</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65세</u> ----- -----</p> <p>8.·9. (현행과 같음)</p>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제45조 및 「 <u>지방공무원법</u> 」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행정절차법</u> 」 제52조의2 ----- ----- ----- ----- ----- ----- ----- -----.

12.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u>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법</u> 」 제7조제8항----- ----- ----- ----- ----- -----.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p> <p>4. ~ 8. (생략)</p>	<p>제2조(지원대상자) -----</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기초연금법」-----</p> <p>-----</p> <p>4. ~ 8. (현행과 같음)</p>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p> <p>시행령 제36조제6항-----</p> <p>-----</p> <p>-----</p>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 ----- ----- ----- ----- ----- ----- ----- ----- -----</p>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30조-- ----- ----- ----- -----.</p>

17.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① 구는 <u>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① --- 「<u>환경정책기본법</u>」 제12조제3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18.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u>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도로”라 함은 <u>도로법 제14조</u>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u>제17조2</u>의 “구도”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1조(목적) ----- 「<u>도로법시행령</u>」 <u>별표2제4호나목</u>----- ----- ----- ----- -----.</p> <p>제2조(정의) ----- ----- -----.</p> <p>1. ----- 「<u>도로법</u>」 <u>제14조</u>----- <u>제18조</u>-----.</p> <p>2. 3. (현행과 같음)</p>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자지정)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  
-----  
-----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  
-----  
-----  
----- 「도로법」 제1  
17조제2항-----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비용 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새마포담당관 김경민 (☎ 3153-8526)